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6-3호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라 「식물별 현장검역 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5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 1. 14.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정 2004.8.5.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4-4호
개정 2005.9.28.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5-11호
개정 2006.12.5.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6-13호
개정 2008.12.30.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11호
개정 2009.3.20.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9-24호
개정 2010.12.7.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10-17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74호
개정 2011.10.1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07호
개정 2012.1.1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00호
개정 2012.11.2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9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05호
개정 2013.12.16.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41호
개정 2014. 11. 10.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19호
개정 2015. 7. 6.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1호
개정 2016. 10. 5.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93호
개정 2017. 12. 2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68호
개정 2019. 1. 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2호
개정 2019. 12. 2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92호
개정 2021.1.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4호
개정 2021.7.2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46호
개정 2023.2.1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5호
개정 2023.12.2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50호
개정 2026.1.1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6-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금지품 유무,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이란 현장검역을 수행한 식물검역관(이하 “현장검역관”이라 한다)이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의 방법에 의해 정밀하게 검사하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 하는 것을 말한다.
3. “독자처분해충”이란 수입검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쉽게 분류동정 되는 해충으로서 현장검역관이 신속히 분류동정하여 검역처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해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출 또는 수입 상대국과 협의하여 특별요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되는 식물은 해당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현장검역의 대상식물 및 검역방법 등) ① 현장검역의 대상식물 및 검역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검사할 수량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을 추출하되 적재화물의 상·중·하, 전·후, 좌·우 등 여러 부위에서 고르게 추출한다.

② 캔, 은박지, 플라스틱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수입되는 종자류는 현장에서 병해충 유무에 대한 검역을 생략하고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역할 수 있다.

③ 현장검역의 검역단위는 식물의 상태 및 병해충의 부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품종별·생산자별·생산지별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 채취 및 실험실정밀검역 의뢰) ① 현장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검역과정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된 식물
2. 현장검역결과 검출된 병해충 또는 병해충 감염·부착이 의심되는 식물

3. 박피되지 아니한 감자, 생강 등 지하부를 통해 영양번식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 다만, 외부 부착 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국내 반입 시의 상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공시설에서 규제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정도로 가공처리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은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방법 및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현장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시료 채취 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정밀검역 후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실험실정밀검역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관(이하 “실험실정밀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독자처분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표본을 실험실에 인계한다.

③ 현장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현장검역결과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우편·휴대·택송 식물 중 비재식용식물
2.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검역이 가능한 수출식물
3.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식물
4. 독자처분해충

제5조의2(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 ① 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의 단서 후단규정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공처리공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식물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내부가해 규제병해충 목록

2. 제1호의 개별 병해충이 승인 신청된 가공처리방법에 의해 사멸될 수 있는지 여부

3. 가공처리 시설의 유무 및 가공처리 시설 기능의 적정성.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공시설의 가공공정을 통해 병해충 사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 분석한 결과 해당 수입식물에 잠복될 수 있는 병해충이 모두 사멸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공처리 방법 및 가공시설을 실험실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로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를 교부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을 승인하는 경우 가공처리장소로의 운송 중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가공처리 시 준수사항, 가공처리 잔재물 처리방법 등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 후 가공처리과정에서 실제 병해충 사멸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완전한 사멸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수입식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조치한다.

제5조의3(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 승인) ① 수입자는 제5조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가공시설에서 승인된 가공처리방법으로 수입식물을 가공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가공처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가공처리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가공처리 장소로의 이동 및 가공처리 과정에서의 병해충 비산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병해충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공처리승인서를 발행한다. 이 경우 수입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문서는 사후관리 종료 후 해당 기관 내 계통보고 절차를 거쳐 해당 검역신청서에 함께 철한다.

제5조의4(가공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이관 등) ① 수입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제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가공처리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가공처리장소가 다른 지역본부·사무소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관리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 확인에 대하여는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입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가공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른 지역본부·사무소에 관리 이관하는 경우 ‘가공처리 승인서’의 가공처리조건에 ‘수입자는 가공처리 대상식물이 가공처리장소에 도착한 때에 지체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실험실정밀검역) ①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정밀검역 여건(전문요원, 장비 등)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재식용식물에 대한 검역신청을 받은 사무소장은 현장검역 후 지역본부 실험실에 정밀검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택배·우편소포·특송서비스 등 신속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본부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③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된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④ 실험실정밀검역의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표목류 검사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⑤ 실험실정밀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 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⑥ 검역본부장은 「식물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 목록」을 지정하여 농림 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제7조(시료 관리) ① 실험실정밀검역이 종료된 시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검역이 종료되기 전에 검역신청인이 검역시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시료에 한하여 사용 잔량을 반납하되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후 반납요구 시료의 잔량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 관리용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품목별 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제4조제1항 관련)

1. 묘목류(묘, 묘목 및 접 · 삽수)

가. 적용품목

- 1) 감귤 · 사과 · 배 · 포도 · 아보카도 등의 과수류식물
- 2) 카네이션 · 국화 · 장미 · 선인장 · 드라세나 등의 화훼류식물
- 3) 소나무 등의 삼림식물 또는 1) · 2)에 포함되지 않는 묘목류
- 4) 밀봉된 용기에 봉입된 조직배양 식물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 ① 수입금지식물 · 잡초 및 격리재배대상식물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등에 검사용 시트를 깔고 식물체 부위별로 반점 · 변색 · 흑 · 마름 · 줄기쫄림 · 황화 · 모자이크 · 줄무늬 · 위축 오갈 등 병징과 각종 해충(알 · 유충 · 번데기 · 성충 등)을 확대경 및 칼 등을 이용하여 검역하며 흙 부착 유무도 검역한다.
- ③ 포장을 해장할 때에는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고 시료를 들어낸 후 상자바닥 등에 떨어진 해충을 검역한다.
- ④ 별표 2의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되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이 되는 시료 위주로 채취하고, 다음 각 호의 것을 시료에 포함시킨다.
 1. 검출된 병해충
 2. 검사용 시트에 떨어진 험잡물, 잔재물
 3. 선충 피해가 의심되는 부위(왜화된 뿌리, 뭉뚱한 뿌리선단, 뿌리혹이 있는 것 등)
- ⑤ 피트모스 · 펄라이트 등을 이용하여 식물체를 식재하였거나 보호재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 시료로 식물체와 함께 채취한다.
- ⑥ 밀봉된 용기에 봉입된 조직배양체(조직배양에 이용되는 세포·원형

질체·Callus·조직배양묘 등으로 감자·양파·마늘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

“이 식물은 해당 조직배양 시설 및 조직배양 과정을 확인한 결과 무균상태로 조직배양 되었음이 인정됨(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relevant tissue culture facility and procedure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plants in this shipment were produced utilizing tissue culture under sterile conditions)”

나. 수입검역 시점에 다음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1) 조직배양 묘인 경우 배양 중의 배지에 조직배양 묘 뿌리가 활착, 고정된 상태로 유지될 것
- 2) 용기는 밀봉된 상태(조직배양 용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필터’는 허용)일 것
- 3) 육안 또는 현미경 등을 이용한 직접검경검사 결과 세균 등 오염이 의심되지 않은 것

2) 실험실정밀검역

가) 병

(1) 진균

- ① 대상: 식물체에 반점·부패·변색·더덩이 등 곰팡이병 증상이 있는 시료
- ② 방법: 습지배양검사법·한천배양검사법·유전자진단법 등

(2) 세균·바이러스·바이로이드 및 파이토플라즈마

- ① 대상: 묘목(접·삽수포함) 등의 상태에서 검출이 가능한 세균·바이러스·바이로이드 및 파이토플라즈마의 기주식물
- ② 방법: 혈청학적검사법·유전자진단법·생물학적검사법 등

(3) 표징이 발현된 병반은 현미경에 의한 직접검경검사

나) 해충

(1) 직접검경검사

① 대상: 벌레구멍, 벌레 먹은 부위 등과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식물체의 눈, 표피 내·외부 등

② 방법: 채집시료를 칼 등으로 조직을 쪼개어 식물체 내·외부를 현미경 등 실험장비를 이용하여 검사

(2) 선충분리검사

① 대상: 뿌리가 있는 모든 묘 또는 묘목류(조직배양묘 제외), 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접수·삽수, 피트모스·펠라이트 등의 보호재

② 방법: 갈때기법·직접검경법·체법·원심분리법·침지법·변형 베르만갈때기법 등

2. 구근류

가. 적용품목

1) 재식용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감자의 **덩이줄기**

2) 재식용 마늘·쪽파 등 채소구근류

3) 재식용 백합·수선·히야신스·글라디올러스 등 화훼구근류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① 수입금지식물, 잡초 및 격리재배대상식물 여부를 확인한다.

②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등에 검사용 시트를 깔고 그 위에 포장단위별로 구근류를 꺼내어 반점·변색·부패·균핵·더덩이 등 병징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용 칼로 구근을 절단하여 구근내부의 변색·부패 등을 검역하며, 해충의 알·유충·성충 등의 유무와 벌레 먹은 부위, 벌레구멍 등은 확대경 등을 이용하여 검역한다.

③ 별표 2의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되 병해충 감염구, 감염의심이 되는 시료, 기형·괴저 등 선충 피해증상으로 의심이 되는 시료 위주로 채취하고, 검사용 시트에 떨어진 병해충, 협잡물, 잔재물을 시료에 포함시킨다.

2) 실험실정밀검역

가) 병

(1) 진균

- ① 대상: 반점 · 부패 · 변색 · 더덩이 등 곰팡이병 증상이 있는 시료
- ② 방법: 습지배양검사법 · 한천배양검사법 · 유전자진단법 등

(2) 세균 ·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및 파이토플라즈마

- ① 대상: 구근 · 괴경 등의 상태에서 검출이 가능한 세균 ·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 및 파이토플라즈마의 기주식물
- ② 방법: 혈청학적검사법 · 유전자진단법 · 생물학적검사법 등

(3) 표징이 발현된 병반은 현미경에 의한 직접검경검사

나) 해충

(1) 직접검경검사

- ① 대상: 벌레구멍, 벌레 먹은 부위 등과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뿌리부분, 식물체의 눈 및 표피 내 · 외부 등
- ② 방법: 채집시료를 칼 등으로 조직을 절개하여 식물체 내 · 외부를 현미경하에서 검사하되, 저온상태의 것은 25~30℃에서 1~2시간 정치 후 검사

(2) 선충분리검사

- ① 대상: 모든 구근류
- ② 방법: 깔때기법 · 직접검경법 · 체법 · 원심분리법 · 침지법 · 변형베르만 깔때기법 · 파쇄분리법 등

3. 종자류

가. 적용품목

곡류 · 채소 · 화훼 · 목초 · 수목류 종자 및 기타종자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 ① 수입금지식물, 잡초여부를 확인한다.
- ②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등에 검사용 시트를 깔고 포장단위별로

균핵·반점·변색·깜부기 등의 병징과 벌레구멍·상대적으로 가벼운 종자 등을 대상으로 해충 유무 및 잡초 등을 확대경·선별체 등으로 검역한다.

③ 선충검사 대상종자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불건전종자 등 선충 피해가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한다.

④ 별표 2의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되 병해충 감염립, 감염 의심이 되는 시료 위주로 채취하고, 현장검역시 병해충 등이 발견되지 않은 종자에 대해서는 검역할 수량의 포장단위에서 골고루 채취하여 혼합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

가) 병

(1) 진균검사

① 대상: 수입되는 모든 건의 종자류

② 방법: 습지배양검사법·한천배양검사법·유전자진단법 등

(2) 세균검사

① 대상: 종자전염 하는 세균병의 기주식물인 종자

② 방법: 혈청학적검사법·유전자진단법 등

(3)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검사

① 대상: 종자전염하는 바이러스병 또는 바이로이드병의 기주식물인 종자

② 방법: 혈청학적검사법·유전자진단법·생물학적검사법 등

나) 해충

(1) 직접검경검사

① 대상: 벌레구멍 또는 벌레 먹은 흔적 등이 있는 시료

② 방법: 시료를 칼등으로 쪼개서 현미경 등 실험장비를 이용하여 검사

(2) 침지 및 파쇄검사

① 대상: 핵과류 종자 등 대립 경실종자

② 방법: 물에 침지하여 뜨는 종자는 파쇄검사

(3) 선충분리검사

- ① 대상: 벼·밀·호밀·보리·톨웨스큐 등의 화본과 종자. 다만, 옥수수 종자를 제외한다.
- ② 방법: 깔때기법·직접검경법·체법·원심분리법·침지법·변형베르만 깔때기법 등

다) 잡초

(1) 잡초종자의 분리

- ① 대상: 재식용으로 수입된 종자류
- ② 방법: 의뢰시료를 잡초선별체로 치거나 체로 치기 어려운 시료는 직접 검사대 위에서 펼쳐가며 현미경 등으로 잡초종자를 분리한다.

(2) 현미경검사

분리된 종자의 외부적 특징(모양·크기·색깔·표면조직·부착물의 모양과 위치 등)을 현미경에서 관찰하여 잡초종자의 표본과 대조하거나 도감, 검색표 등을 이용 분류동정하여 검역잡초 여부를 검사한다.

4. 생과실류

가. 적용품목

- 1) 감귤·사과·포도·양벚·파인애플 등의 생과실
- 2) 밤·은행·호도·피칸 등의 견과류 중 신선한 외과피(핵 바깥 부분)가 부착된 것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 ① 대상: 서류검역대상 이외의 모든 과실류
- ② 방법
 - 1. **선박**의 경우 선창별로 검사할 수량을 네모서리와 중앙부위에서 2단 깊이 이상까지 균일하게 검역
 - 2. 창고나 야적지의 경우 검사단위 내에서 더미별로 네모서리 또는 대각선으로 균일하게 검역

3. 포장을 열고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또는 시트 등에 과일을 쏟아
검사하고 잔재물과 검사대 또는 시트바닥에 떨어진 해충을 검역

③ 중점적으로 검역할 부위

1. 변색·부패·그을음 등의 병징 유무
2. 과실의 꼭지와 배꼽 부위, 움푹한 곳, 밑남질이 있는 곳
3. 산란흔·벌레구멍·벌레똥 등의 해충 피해증상이 있는 부위
4. 기형과실, 탄력의 차이가 있는 과실, 일부 부패한 부위가 있는
과실 등

④ 별표 2의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되 병해충 감염 과실, 감염 의심이 되는 과실 위주로 채
취하고, 검사용 시트에 떨어진 병해충, 협잡물을 시료에 포함시킨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1. 박피된 과실(코코넛야자 등)
2. 소독처리한 생과실 중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식물

2) 실험실정밀검역

① 대상: 과실표면에 반점·부패·더덩이·그을음 등 병징이 있는 시료,
병해충이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이 되는 시료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 방법

1. 현미경 등 장비를 활용하여 병원균을 직접검경검사 또는 습지배양
검사·한천배양검사 등으로 검사
2. 저온상태의 과실은 해충이 저온으로 인하여 잠복할 수 있으므로
25~30℃에서 1~2시간 정치 후 검사
3. 과실내부를 가해하는 해충(망고바구미 등)검사를 위하여 대상과실의
과육과 종자를 절개하여 검사
4. 각지벌레류 등 생사판별이 어려운 해충은 열처리법 또는 아이오딘
검정법(Iodine test)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검사

5. 생채소류 및 생한약재, 생버섯류

가. 적용품목

- 1) 호박 · 수박 · 메론 · 가지 · 고추 등의 열매채소류, 배추 등의 엽경채류
- 2) 비채식용 마늘 · 양파 등의 인경채류, 생강 · 더덕 · 마 · 토란 등의 근채류
- 3) 버섯류 및 비채식용 감자 · 고구마
- 4) 비채식용의 작약 등 뿌리 한약재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 ① 수입금지식물, 흙부착 여부를 검역한다.
- ② 포장을 열고 포장물과 검역대상식물에 병해충 유무를 검역한다.
- ③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또는 시트 등에 식물을 쏘아 개체별로 검역하고, 검사잔재물 · 검사대 또는 시트 바닥에 떨어진 해충 유무를 검역한다.
- ④ 엽경채류의 경우는 흔들어서 털어 보거나 잎과 잎 사이를 벌려서 알 덩어리 등의 병해충 유무를 검역한다.
- ⑤ 중점적으로 검역할 부위는 다음과 같다.
 1. 식물표면의 반점 · 변색 · 부패 · 그을음 · 더덩이 부위
 2. 벌레 먹은 흔적 · 산란흔적 · 벌레 똥 · 거미줄이 있는 부위
 3. 식물이 서로 겹치거나 주름진 부위
 4. 엽경채류의 경우 수침상 반점, 꾸불꾸불한 터널 부위
 5. 열매채소의 꼭지와 배꼽, 탄력의 차이가 있는 부위
 6. 인경채류 · 근채류 및 감자 · 고구마의 경우 절개하여 내부의 병반, 선충의 감염부위 등
 7. 냉장상태의 버섯 등은 포장재 내부의 바닥
- ⑥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용 시트에 떨어진 병해충, 협잡물, 잔재물을 시료에 포함시킨다.
 1. 병해충에 감염 또는 감염 의심이 되는 식물
 2. 박피되지 않은 감자 · 고구마

3. 껍질이 붙어 있는 생강, 세척 또는 박피되지 않은 근채류
4. 배추·양배추·아스파라가스 등의 엽경채류. 다만, 꽃봉오리 부위가 제거된 마늘종은 제외한다.
5. 호박·메론 등의 과채류
6. 뿌리가 부착된 상태의 인경채류 및 7월~10월 수입된 성숙된 상태의 마늘. 다만, 성숙된 상태의 마늘은 7월~10월에 수입(수입일자 기준)된 것으로서 수송 또는 보관 중 0℃ 이하에서 5일 이상 냉동처리(검사 시점에 온도기록지 등으로 냉동처리의 적정여부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되지 않은 것에 한하며, 샬롯·양파와 미성숙 상태의 세척된 마늘은 제외한다.
7. 뿌리 한약재. 다만, 박피되었거나 뿌리로 번식이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

가) 병

(1) 진균

- ① 대상: 반점·부패·변색·더덩이 등 곰팡이병 증상이 있는 시료
- ② 방법: 습지배양검사법·한천배양검사법·유전자진단법 등

(2) 세균·바이러스·바이로이드 및 파이토플라즈마검사

① 대상

1. 식물체에 반점·부패·변색 등 세균병 증상, 모자이크·황화·위축·윤문·줄무늬 등 바이러스병 또는 바이로이드병의 증상이 있거나 감염 의심이 되는 시료
2. 뿌리가 부착된 상태의 인경채류 및 7월~10월 수입된 성숙된 상태의 마늘. 다만, 성숙된 상태의 마늘은 7월~10월에 수입(수입일자 기준)된 것으로서 수송 또는 보관 중 0℃ 이하에서 5일 이상 냉동처리(검사 시점에 온도기록지 등으로 냉동처리의 적정여부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되지 않은 것에 한하며, 샬롯·양파와 미성숙 상태의 세척된 마늘은 제외한다.

- ② 방법: 혈청학적검사법·유전자진단법·생물학적검사법 등

나) 해충

① 의뢰시료에 대해 현미경 등 실험실장비를 이용하여 해충 유무를 다음과 같이 검사

1. 아스파라가스 등 엽경채류는 새순이나 잎을 해부칼 등으로 절개하여 검사
2. 근채류 및 감자·고구마의 경우 눈이 있는 부위와 부패된 부위에 해충유무를 검사
3. 버섯류의 갓 아래부위 주름에 해충이 숨어 있는지 검사
4. 열매채소의 꼭지와 배꼽, 탄력의 차이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 내부가해 해충의 여부를 검사

② 저온상태의 채소류는 시료를 25~30℃에서 1~2시간 정치 후 검사한다.

다) 선충분리검사

① 대상

1. 박피되지 않은 감자·고구마
2. 껍질이 붙어 있는 생강, 세척 또는 박피되지 않은 근채류
3. 뿌리가 부착된 상태의 인경채류 및 7월~10월 수입된 성숙된 상태의 마늘. 다만, 성숙된 상태의 마늘은 7월~10월에 수입(수입일자 기준)된 것으로서 수송 또는 보관 중 0℃ 이하에서 5일 이상 냉동처리(검사시점에 온도기록지 등으로 냉동처리의 적정여부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되지 않은 것에 한하며, 샬롯·양파와 미성숙 상태의 세척된 마늘은 제외한다.
4. 뿌리 한약재. 다만, 박피되었거나 뿌리로 번식이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② 방법: 깔때기법·직접검경법·체법·원심분리법·침지법·변형베르만 깔때기법·파쇄분리법 등

6. 화훼류 등의 절화·절지·절간(折幹)

가. 적용품목

비재식용 화훼류 등의 절화 및 절지로 건조된 것은 제외한다.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 ① 수입금지식물(신선 열매 부착 등) 여부를 확인한다.
- ② 포장을 해장할 때 해충의 비산유무를 확인하고, 시료를 들어낸 후 상자 바닥 등에 떨어진 해충을 검역한다.
- ③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등에 검사용 시트를 깔고 식물체 표면에 반점·마름·부패·변색·더덩이 등의 이병증상 유무와 다발별로 흔들거나 손 등으로 두들겨 떨어진 해충을 검역한다.
- ④ 꽃송이·줄기 등 개체별로 확대경 등을 이용하여 부착된 알·유충·번데기 등을 검역한다.
- ⑤ 저온상태로 보관된 경우는 해충이 잠복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 ⑥ 중점적으로 검역할 부위
 1. 잎·줄기의 변색부위
 2. 꽃 또는 잎이 붙어있는 부위에 백색 분비물 등
 3. 잎 뒷면 엽맥부위에 각지와 가루이의 용각 등 부착 유무
 4. 잎 표면에 수침상 반점, 꾸불꾸불한 터널의 해충 유무
 5. 잎 표면에 엽록소가 파괴되어 얼룩반점 등이 있는 경우, 뒷면의 거미줄·벌레똥 등을 확인하고 응애류·충채벌레류의 부착 유무
 6. 꽃잎, 꽃받침 등의 사이
 7. 상처가 있는 경우 내부에 알, 유충 등의 유무
- ⑦ 별표 2의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되 병해충 감염 또는 감염 의심이 되는 부위를 위주로 채취하고, 검사용 시트에 떨어진 병해충, 협잡물을 시료에 포함시킨다. 다만, 잎이나 꽃이 붙어있지 않고 병해충 감염 의심이 되지 않는 수수대·사탕수수대·옥수수대는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할 수 있다.

2) 실험실정밀검역

가) 병

- ① 대상: 식물체의 각 부위 표면에 반점·마름·부패·변색·더덩이 등의 증상이 있는 시료와 황화·위축·모자이크·줄무늬 등 증상이 있는 시료
- ② 방법: 현미경 등을 통한 직접검경검사·습지배양검사·한천배양검사 등으로 한다. 다만, 장미·국화·카네이션절화는 모자이크·황화·위축·윤문·줄무늬 등의 병징을 대상으로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나) 해충

- ① 대상: 모든 절지·절화류
- ② 방법
 - 1. 저온상태의 시료는 25~30℃에서 1~2시간 정치 후 검사
 - 2. 꽃송이·잎·절지 등을 개체별로 털거나, 해부칼·핀침 등으로 절개하여 현미경하에서 잠복해충을 검사
 - 3. 많은 양을 검사할 때는 시료를 물속에 담가 부유하는 해충검사

7. 버섯종균

가. 적용품목

- 1) 톱밥·낙면(폐면)·곡류 등 멸균된 배지에 종균을 접종한 버섯종균
- 2) 순수한 버섯균사체를 감자한천배지 등에 배양하여 시험관 등에 봉입한 버섯종균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 ① 수입금지식물(왕겨 등) 혼입여부를 확인한다.
- ②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에서 버섯종균 고유의 색깔·냄새 및 다른 균의 감염여부를 중점 검역한다.
- ③ 검역결과 변색되었거나, 악취가 나거나,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2의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

가) 진균 및 세균검사

- ① 대상: 현장검역결과 버섯종균이 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뢰한 시료
- ② 방법: 직접검경검사 또는 습지배양검사법 · 한천배양검사법 등

나) 바이러스

- ① 대상: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된 버섯종균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방법: 혈청학적검사법 · 유전자진단법 등

다) 해충

- ① 대상: 해충에 감염된 시료 및 감염 의심이 되는 시료
- ② 방법: 현미경에서 직접검경 또는 사육검사

8. 곡 류

가. 적용품목

쌀 · 보리 · 수수 · 조 · 옥수수 · 콩 · 녹두 · 동부 · 땅콩 · 아주까리 · 아마인 · 코푸라 등으로서 유료 · 양조 · 제분 · 비료 · 사료 · 식량 등으로 이용될 식물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가) 전용선박으로 수입한 곡류

(1) 선상검역: 선상에서 다음에 의거 실시한다.

(가) 산물로 적재된 곡류

- ① 선창을 열어 해충의 비산 및 이동여부를 관찰하고 선창내 벽면과 곡류의 표면 등에 해충의 유충, 번데기 등 부착여부와 곡류에 혼입된 잡초종자 및 흙의 혼입여부를 검역한다.
- ② 검역할 수량을 선창수로 나누어(예 $250\text{kg} \div 5\text{선창} = 50\text{kg}$) 선창당 검역 수량을 정하여 검역부위(5개소)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검역한다.
- ③ 선창별로 중앙과 네모서리 등 5개 부위에서 표층으로부터 30~50cm 깊이까지 선별채로 쳐서 해충과 잡초종자를 검역하며, 해충과 잡초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검역한다.

④ 중점적으로 검역할 부위

1. 온도가 높은 기관실 및 선실 쪽의 화물과 벽체
2. 벽체의 접합부, 선체벽 내부의 테두리
3. 수침된 곳, 습기가 많은 부분, 곡물가루가 덮인 곳, 부패된 곳
4. 거미줄 등 해충의 서식 흔적이 있는 곳, 벌레 먹은 곡물
5. 곡류가 뭉쳐 있는 곳, 곡류의 줄기, 껍질, 깍지 및 옥수수 속대, 잎 등의 잔재물 등
6. 상층부에 국화과 잡초의 관모가 몰려 있는 곳 등

(나) 포장된 곡류

① 선창문을 열어 해충의 비산 및 이동여부를 관찰하고 선창내 벽면과 포장물의 표면 및 이음새 등에 붙어있는 유충과 번데기 등을 면밀히 검역한다.

② 검역할 수량을 선창수로 나누어 선창 당 검역할 수량을 정하여 5개소(네모서리, 중앙부위)로 나누어 상층부에서 2-3열까지 균일하게 검역시료를 채취 후 선별체로 쳐서 협잡물 속의 해충과 잡초종자 및 흙의 혼입여부를 검역하고, 해충의 서식 흔적이 있는 곡물은 쪼개어 해충을 검역한다.

(2) 2차검역

(가) 하역되지 않은 곡류

선상검역 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하역된 곡류

네모서리와 지표면의 둘레에서 벌레 먹은 곡물, 협잡물 등을 검역한 다음, 시료를 채취하여 선별체로 쳐서 해충과 잡초종자 및 흙의 혼입여부를 검역한다.

(3) 검역결과 병해충 부착 의심이 되는 경우 별표 2의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나) 전용선박이 아닌 수단으로 수입된 곡류

(1) 적재곡물의 중앙과 네모서리 등 5개 부위에서 상층, 중간층과 지표면의 둘레, 포장물의 둘레, 틈사이 봉합부 등과 벌레 먹은 곡물, 협잡물 등을 철저히 검역한 다음 시료를 선상검역에 준하여 채취하여 선별체로 쳐서 해충과 잡초종자 및 흙의 혼입여부를 검역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 채취는 ‘전용선박으로 수입한 곡류’를 준용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

실험실정밀검역은 생략한다. 다만, 병해충의 부착이 의심되어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한 시료에 대해서는 실험실 장비를 활용하여 의심 시료를 정밀하게 검사한다.

9. 목재류

가. 적용품목

- 1) 나왕류 · 미송류 등의 원목 · 각재 · 판재 등
- 2) 왕대 · 솜대 등의 통대나무 · 활죽 등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 ① 수입금지식물 또는 금지식물의 혼입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선박의 갑판 위에 적재된 목재류의 상층부위를 검역하고 검역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갑판 위에 적재된 목재류를 하역하고 선창별로 홀드 뚜껑(선창 덮개)을 연 후 홀드 내에 적재된 목재류를 검역한다.
- ③ 야적장에 적재된 경우에는 병해충 부착이 의심되는 개체 및 목재류의 틈 사이를 검역한다.
- ④ 끝 · 자귀 등을 이용하여 해충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집중검역한다.
- ⑤ 각재 등 작은 것과 박피된 나무껍질은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두드려서 떨어져 나오는 목재류 조각을 모아서 검역한다.
- ⑥ 목재를 직접 가해하는 해충 외에 나무껍질 등에서 잠복하는 해충이 많으므로 나무껍질 틈 사이를 주의 깊게 검역한다.
- ⑦ 등나무의 경우 벌레구멍에 나무가루가 있는 경우 톱으로 잘라 잘게 쪼개서 검역한다.
- ⑧ 죽재류 중 통대나무의 경우 벌레구멍이 있는 부위와 밑둥치 부위를 톱으로 잘라 벌레구멍이 있는 경우 계속 마디를 잘라 벌레구멍이 끝나는 부위를 검역한다.

⑨ 할죽과 대나무 제품의 경우 벌레가 먹어 나무가루가 있는 부위를 절개하여 검역한다.

⑩ 중점적으로 검역할 부위

1. **나무껍질**이 약간 들떠 있는 부위와 벌레 먹은 부위
2. 썩은 부위, **나무껍질** 밑과 내부의 번데기 집 등이 있는 부위
3. 벌레의 배설물 또는 나무가루가 있는 벌레구멍 부위
4. 껍질의 쪼개진 틈, 기타 해충 부착가능성이 있는 부위 등

⑪ 검역결과 병해충 부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위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로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

실험실정밀검역은 생략한다. 다만, 병해충의 부착이 의심되어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 시료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관이 현장검역시 집중적으로 검역할 부위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검사한다.

10. 한약재 · 향신료 등의 원료

가. 적용품목

한약재 및 후추 · 커피두 · 코코아두 등의 향신료 또는 기호품 등의 원료로 건조된 것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 ① 수입금지식물 및 혼입여부를 확인한다.
- ② 구성된 검역단위의 포장물 틈사이 등을 검역한다.
- ③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등에 검사용 시트를 깔고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쏟아내어 체를 이용하거나 털어서 병해충의 부착유무를 검역한다.
- ④ 벌레가 먹거나 알을 낳은 흔적이 있고 벌레 똥, 기형 등이 있는 것은 쪼개어 내부를 검역한다.
- ⑤ 중점적으로 검역할 부위
 1. 포장재료 및 그 이음새에 거미줄이 있는 부위

2. 벌레 먹은 흔적, 벌레구멍, 벌레 똥이 있는 부위
 3. 거미줄 등으로 여러 개체가 뭉쳐 있는 것
 4. 부패한 부위 및 기형부위 등
- ⑥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는 생략한다. 다만, 병해충의 부착이 의심되는 경우와 한약재 중 토사자(새삼)·창이자(도꼬마리)·삼자(돌피)·야료두(돌콩)·백마(어저귀)·경마(어저귀), 야현채(개비름)·반지현(털비름) 등 잡초에 해당되는 식물이나 초종용 등 기생식물의 종자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된 경우에는 별표 2의 시료채취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발아시험) 의뢰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

- ① 병해충 부착이 의심되는 시료에 대하여 현미경 등 실험실장비를 활용 정밀하게 검사한다.
- ② 발아시험을 의뢰한 토사자(새삼)·창이자(도꼬마리)·초종용 등 잡초 또는 기생식물의 종자는 습지배양·한천배양·TTC검정 등으로 검사한다.

11. 잡화류

가. 적용품목

- 1) 아마·삼·아바카 등의 조섬유, 짚, 가마니·새끼 등의 짚제품
- 2) 건과실류·건채소류·건초류·건버섯류·건화·분말류·신선한 외과피(핵 바깥 부분)가 제거된 건과류·기타 잡화류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 ① 수입금지 식물(벚집, 왕겨 등) 또는 이의 혼입 여부를 확인한다.
- ② 마대 등으로 포장된 경우 마대 틈 사이와 봉합선 부위 등에서 해충을 검역한다.
- ③ 조섬유, 짚제품의 경우 묶음의 매듭부위를 주위 깊게 검역하고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등에 검사용 시트를 깔고 털거나 선별체로 친 후 떨어진 해충을 검역한다.

④ 상자 등으로 포장된 경우는 포장물에 해충 부착여부와 해장 시 해충 비산여부를 검역하고 화물을 들어낸 후 바닥에 떨어진 해충을 검역한다.

⑤ 벌레 똥, 가루 등이 있는 것은 쪼개어 내부해충을 검역한다.

⑥ 중점적으로 검역할 부위

1. 포장물의 이음새와 겹친 부위

2. 검역대상식물의 여러 개체가 거미줄 등으로 얽혀 있는 부위

3. 벌레구멍·벌레 똥이 있는 부위

4. 축축하거나 부패된 부위 등

⑦ 검역결과 병해충 부착 의심이 되는 경우 별표 2의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

실험실정밀검역은 생략한다. 다만, 병해충의 부착이 의심되어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한 시료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역한다.

12. 냉동식물류

가. 적용품목

냉동채소류·냉동과실류·기타 냉동식물류 등으로 검역시점에서 -17.8°C 이하로 냉동처리 된 식물류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①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서류검역 대상식물 이외의 냉동식물에 대하여 검역한다.

② 수입금지식물 또는 수입금지식물 혼입여부를 확인한다.

③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 등에 검사용 시트를 깔고 병해충 및 흙부착 유무를 검역한다.

④ 검역결과 병해충 부착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식물을 실험실정밀 검역용 시료로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2) 실험실정밀검역

실험실정밀검역은 생략한다. 다만 병해충의 부착이 의심되어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한 시료는 정밀하게 검사한다.

13. 수분용으로 수입되는 화분

가. 적용품목

배, 사과, 키위 등의 수분용 화분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 ① 냉장·냉동 등 보관상태를 확인한다.
- ②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에서 화분의 오염 및 변색유무를 검역한다.
- ③ 검역결과 화분이 변색되어 있는 등 오염이 의심되거나, 규제병원균 등이 화분에 의해 전염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실험실정밀 검역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단, 위의 ‘화분에 의해 전염되는 품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식물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 목록](#)」에 따른다.

2) 실험실정밀검역

- ① 진균 배양검사는 생략한다. 다만, 변색 등 오염된 화분은 예외로 한다.
- ② 화분전염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사한다.

14.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유전자원

가. 적용품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유전자원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은 생략한다. 다만, 관련서류 확인 과정에서 품목 및 수량이 수입신청 내용과 상이하거나 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품목별 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 방법에 따라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할 수 있다.

15.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이하 KOLAS 라고 한다) 인정 실험방법

가. 적용분야

세균, 바이러스,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실험실정밀검역

KOLAS 실험방법은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3조제2항을 따른다.

[별표 2]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제5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 분	종 류	시료채취기준
과종 및 재식용	○ 종자류 - 대립종 - 중 · 소립종 - 선충검사 대상(대 · 중 · 소립종) - 수분용 화분 ○ 묘목류(삽수, 접수 포함) - 목본식물 - 초본식물 ○ 구근류 - 중 · 대형구 - 소형구 ○ 서류(고구마, 감자 등) ○ 버섯종균(병해충 감염·부착이 의심되는 경우)	200g 50g 500g 10g 2개와 부위별 약간 또는 1kg *병해충 감염 · 부착 의심시 최고 5개 5개와 뿌리 및 병징 약간 또는 1kg 20개 1kg 5kg 1개(병, 봉지)
비 재식용	○ 생과실류 - 소독미처리 · 대형과실 · 중형과실 · 소형과실 - 소독처리(병해충 감염·부착이 의심되는 경우) ○ 생채소류(과채 · 엽경채 · 감자 등) ○ 생근채류 · 생뿌리 한약재(박피되지 않았거나 병해충 감염·부착이 의심되는 경우) ○ 생버섯류(병해충 감염·부착이 의심되는 경우) ○ 화훼류 등의 절화 · 절지 ○ 곡류(병해충 감염·부착이 의심되는 경우) ○ 한약재, 향신료, 잡화류 등(병해충 감염·부착이 의심되는 경우) ○ 한약재중 잡초여부 확인을 위한 발아 시험대상(토사자, 창이자 등) - 대립종 - 중 · 소립종	2개 3kg 2kg 1kg 1kg 1kg 500g 20개 1kg 500g 200g 50g

2. 보충기준

- 가. “1. 일반기준”에 없는 종류는 유사한 종류의 시료채취기준을 적용한다.
- 나. 시료의 개체 크기에 따라 채취하고자 하는 수량이 시료채취기준의 무게와 정확히 일치될 수 없는 경우 시료채취기준 이상의 무게로서 시료채취기준과 가장 근접한 무게가 될 수 있는 만큼의 개수를 채취한다.
- 다. 제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부를 통해 영양번식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재식용에 준하여 채취한다.
- 라. 조직배양체(감자·양파·마늘 등)는 버섯종균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 마. 수입량이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량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시료채취기준
 - 1) 수입량 전량을 시료채취하고 실험실정밀검역에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한 후 잔량을 반납한다. 실험실정밀검역에 필요한 최소량은 수입수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근류·묘목 등 식물체의 경우 병해충의 부착이 의심되는 부위를 개체에서 부분적으로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 2) 종자류의 경우 생산 관리 번호 등으로 시료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한의 포장물에서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 바. 캔, 은박지, 플라스틱 등으로 밀봉포장 된 시료의 채취 기준은 kg, 캔 또는 봉지 등으로 할 수 있다.
- 사. 종자류와 구근류의 크기 적용기준
 - 1) 종자는 벼·소맥종자를 중립종으로 하되, 종자의 크기 구분이 육안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포장단위 별로 골고루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한 후 종자 20립에 대한 장축을 기준으로 평균 5mm부터 7mm까지를 중립종으로 하고 이들보다 큰 종자는 대립종, 작은 종자는 소립종으로 한다.
 - 2) 구근은 튜립을 중형구로 하여 이들보다 큰 구근은 중·대형구로 작은

구근은 소형구로 한다.

아. 종자류 실험실정밀검역에 필요한 최소량 : 600립 이상

- 1) 배양검사: 400립 이상
- 2) PCR·항혈청검사: 200립 이상(박과류의 CGMMV 검사는 300립 이상)
- 3) 종자류 수입량이 실험실정밀검역에 필요한 최소량 이하인 경우 50% 이내의 수량으로 검사한다.

자. 생과실류의 크기 적용 기준

- 1) 사과·망고·바나나·참외·포도·오렌지 및 이들과 동등한 크기의 과실을 중형과실로 하고, 이들보다 큰 과실(두리안, 파인애플, 파파야, 멜론 등)은 대형과실로, 이들보다 작은 과실(망고스틴, 레몬, 감귤, 여지, 양벚, 블루베리 등)은 소형과실로 한다.
- 2) 위 '1)'에 예시되지 아니한 과실로서 크기 적용이 애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1kg 이상의 것은 대형과로, 200g 이하의 것은 소형과로, 200g 초과부터 1kg 미만까지는 중형과로 한다.

차. “1. 일반기준”의 시료채취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역결과 병해충의 부착·오염이 의심되고 한정된 시료채취 기준으로 인해 이들 일부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중점관리품목 등은 기준량을 초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카. “1. 일반기준”의 시료채취기준에도 불구하고 드라세나·파키라 등 식물체가 대형인 묘목류는 병해충의 부착 의심이 되는 잎·줄기·뿌리 등을 절단, 박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개체에서 부분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

[별표 3]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표목류 목록(제6조제4항 관련)

검사대상 식물	검사대상 금지병원체			비 고
	병원체 학명	일반명	구분	
Acer 등	Xylella fastidiosa	포도피어슨병	세균	Xylella fastidiosa 검사대상 목록은 규제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붙임 1] X. fastidiosa (X. taiwanensis) 관련 수입금지 식물을 따른다
Rutaceae(운향과)	Citrus huanglongbing disease	감귤황록병	세균	운향과 속 목록 ¹⁾
Solanum tuberosum(감자), Solanum lycopersicum(토마토), Capsicum annuum(고추, 파프리카), Solanum betaceum(tamarillo), Physalis peruviana(cape gooseberry) Daucus carota(당근), Apium graveolens(셀러리/셀러리악) Petroselinum crispum(파슬리) Pastinaca sativa(파스닙) Solanum melongena(가지) Physalis philadelphica(토마틸로)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um	제브라칩병	세균	
Maloideae/Amygdaloideae(배나무아과), Prunus spp.(복숭아속식물), Rubus spp.(나무딸기속) Fragaria spp.(딸기속) Rosa spp.(장미속) Spiraea prunifolia(조팝나무) Aruncus spp. Cowania spp. Dryas spp. Geum spp.(뱀무속) Holodiscus spp. Physocarpus spp.(국수나무속) Potentilla spp.(양지꽃속)	Erwinia amylovora	과수화상병	세균	배나무아과 속 목록 ²⁾
Maloideae/Amygdaloideae(배나무아과), Prunus spp.(복숭아속식물), Rubus spp.(나무딸기속) Convolvulus arvensis.(서양메꽃) Taraxacum officinale.(서양민들레) Ligustrum vulgare.(쥐똥나무일종) Trifolium spp.(토끼풀속) Euonymus europaeus.(사철나무속일종)	Plum pox virus	자두곰보병	바이러스	배나무아과 속 목록 ²⁾

Solanaceae(가지과), Ipomoea spp.(고구마속) Dahlia spp.(다알리아속) persea americana.(아보카도) Hevea brasiliensis(파라고무나무) Atriplex semilunaris Chenopodium eremaeum Erigeron bonariensis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갈죽병	바이로이드	가지과 속 목록 ³⁾
Vitis spp.	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	포도황화병	파이토 플라즈마	
Maloideae/Amygdaloideae(배나무아과), Prunus spp.(복숭아속식물) Rubus spp.(나무딸기속)	Apple proliferation phytoplasma	사과빛자루병	파이토 플라즈마	배나무아과 속 목록 ²⁾

* 교배종인 경우 교배에 사용된 부모 식물이 모두 금지병원체 기주식물과 유전적 연관성이 없음을 검역관련 서류(식물검역증, 무역관련 서류 등) 제출을 통해 검역관이 확인할 수 있다면 정밀검역 검사대상에서 면제 가능

1) 운향과(Rutaceae)에 해당하는 속 목록(153 속)

<i>Acmadenia</i>	<i>Chorilaena</i>	<i>Euodia</i>	<i>Muiriantha</i>	<i>Raputia</i>
<i>Acradenia</i>	<i>Citropsis</i>	<i>Euxylophora</i>	<i>Murraya</i>	<i>Raputiarana</i>
<i>Acronychia</i>	<i>Citrus</i>	<i>Fagaropsis</i>	<i>Myrtopsis</i>	<i>Rauia</i>
<i>Adenandra</i>	<i>Clausena</i>	<i>Flindersia</i>	<i>Naringi</i>	<i>Raulinoa</i>
<i>Adiscanthus</i>	<i>Cneoridium</i>	<i>Galipea</i>	<i>Naudinia</i>	<i>Ravenia</i>
<i>Aegle</i>	<i>Cneorum</i>	<i>Geijera</i>	<i>Nematolepis</i>	<i>Raveniopsis</i>
<i>Aeglopsis</i>	<i>Coatesia</i>	<i>Geleznowia</i>	<i>Neobyrmesia</i>	<i>Rhadinothamnus</i>
<i>Afraegle</i>	<i>Coleonema</i>	<i>Glycosmis</i>	<i>Neoraputia</i>	<i>Ruta</i>
<i>Afraurantium</i>	<i>Comptonella</i>	<i>Halfordia</i>	<i>Neoschmidea</i>	<i>Rutaneblina</i>
<i>Agathosma</i>	<i>Conchocarpus</i>	<i>Haplophyllum</i>	<i>Nycticalanthus</i>	<i>Sarcomelicope</i>
<i>Almeidea</i>	<i>Correa</i>	<i>Harrisonia</i>	<i>Orixa</i>	<i>Sheilanthera</i>
<i>Amyris</i>	<i>Crossosperma</i>	<i>Helietta</i>	<i>Pamburus</i>	<i>Sigmatanthus</i>
<i>Andreodoxa</i>	<i>Crowea</i>	<i>Hortia</i>	<i>Paramignya</i>	<i>Skimmia</i>
<i>Angostura</i>	<i>Decagonocarpus</i>	<i>Ivodea</i>	<i>Peltostigma</i>	<i>Sohnreyia</i>
<i>Apocaulon</i>	<i>Decatropis</i>	<i>Leonema</i>	<i>Pentaceras</i>	<i>Spathelia</i>
<i>Asterolasia</i>	<i>Decazyx</i>	<i>Leptothyrsa</i>	<i>Perryodendron</i>	<i>Spiranthera</i>
<i>Atalantia</i>	<i>Desmotes</i>	<i>Limonia</i>	<i>Phebalium</i>	<i>Stauranthus</i>
<i>Balfourodendron</i>	<i>Dictamnus</i>	<i>Lubaria</i>	<i>Phellodendron</i>	<i>Swinglea</i>
<i>Balsamocitrus</i>	<i>Dictyoloma</i>	<i>Lunasia</i>	<i>Philotheca</i>	<i>Tetractomia</i>
<i>Boenninghausenia</i>	<i>Dinosperma</i>	<i>Luvunga</i>	<i>Phyllosma</i>	<i>Tetradium</i>
<i>Boronia</i>	<i>Diosma</i>	<i>Maclurodendron</i>	<i>Picrella</i>	<i>Thamnosma</i>
<i>Bosistoa</i>	<i>Diplolaena</i>	<i>Macrostylis</i>	<i>Pilocarpus</i>	<i>Ticorea</i>
<i>Bottegoa</i>	<i>Drummondita</i>	<i>Medicosma</i>	<i>Pitavia</i>	<i>Toddalia</i>
<i>Bouchardatia</i>	<i>Dutaillioopsis</i>	<i>Megastigma</i>	<i>Pitaviaster</i>	<i>Toxosiphon</i>
<i>Brombya</i>	<i>Dutaillaea</i>	<i>Melicope</i>	<i>Pleiospermium</i>	<i>Triphasia</i>
<i>Burkillanthus</i>	<i>Empleurum</i>	<i>Merope</i>	<i>Plethadenia</i>	<i>Vepris</i>
<i>Calodendrum</i>	<i>Eriostemon</i>	<i>Merrillia</i>	<i>Polyaster</i>	<i>Wenzelia</i>
<i>Casimiroa</i>	<i>Ertela</i>	<i>Metrodorea</i>	<i>Pseudiosma</i>	<i>Zanthoxylum</i>
<i>Cedrelopsis</i>	<i>Erythrochiton</i>	<i>Microcybe</i>	<i>Psilopeganum</i>	<i>Zieria</i>
<i>Chloroxylon</i>	<i>Esenbeckia</i>	<i>Micromelum</i>	<i>Ptaeroxylon</i>	
<i>Choisya</i>	<i>Euchaetis</i>	<i>Monanthocitrus</i>	<i>Ptelea</i>	

2) 배나무아과에 해당하는 속 목록(29 속)

<i>Amelanchier</i>	<i>Cotoneaster</i>	<i>Hesperomeles</i>	<i>Osteomeles</i>	<i>Rhaphiolepis</i>
<i>Aria</i>	<i>Crataegus</i>	<i>Heteromeles</i>	<i>Peraphyllum</i>	<i>Sorbus</i>
<i>Aronia</i>	<i>Cydonia</i>	<i>Kageneckia</i>	<i>Photinia</i>	<i>Stranvaesia</i>
<i>Borkhausenia</i>	<i>Dichotomanthes</i>	<i>Lindleya</i>	<i>Pseudocydonia</i>	<i>Vauquelinia</i>
<i>Chaenomeles</i>	<i>Docynia</i>	<i>Malacomeles</i>	<i>Pyracantha</i>	<i>Mespilus</i>
<i>Chamaemeles</i>	<i>Eriobotrya</i>	<i>Malus</i>	<i>Pyrus</i>	

3) 가지과에 해당하는 속 목록(97 속)

<i>Acnistus</i>	<i>Coeloneurum</i>	<i>Grammosolen</i>	<i>Nicandra</i>	<i>Schultesianthus</i>
<i>Alkekengi</i>	<i>Combera</i>	<i>Henoonia</i>	<i>Nicotiana</i>	<i>Schwenckia</i>
<i>Anisodus</i>	<i>Crenidium</i>	<i>Heteranthia</i>	<i>Nierembergia</i>	<i>Sclerophylax</i>
<i>Anthocercis</i>	<i>Cuatresia</i>	<i>Hunzikeria</i>	<i>Nolana</i>	<i>Scopolia</i>
<i>Anthotroche</i>	<i>Cyphanthera</i>	<i>Hyoscyamus</i>	<i>Nothoestrum</i>	<i>Sessea</i>
<i>Athenaea</i>	<i>Darcyanthus</i>	<i>Iochroma</i>	<i>Oryctes</i>	<i>Solandra</i>
<i>Atropa</i>	<i>Datura</i>	<i>Jaborosa</i>	<i>Pantacantha</i>	<i>Solanum</i>
<i>Atropanthe</i>	<i>Deprea</i>	<i>Jaltomata</i>	<i>Petunia</i>	<i>Streptosolen</i>
<i>Aureliana</i>	<i>Discopodium</i>	<i>Juanullosa</i>	<i>Physalis</i>	<i>Symonanthus</i>
<i>Benthamiella</i>	<i>Duboisia</i>	<i>Latua</i>	<i>Physochlaina</i>	<i>Trianaea</i>
<i>Brachistus</i>	<i>Duckeodendron</i>	<i>Leptoglossis</i>	<i>Plowmania</i>	<i>Tsoala</i>
<i>Browallia</i>	<i>Dunalia</i>	<i>Leucophysalis</i>	<i>Protoschwenckia</i>	<i>Tubocapsicum</i>
<i>Brugmansia</i>	<i>Dyssochroma</i>	<i>Lycianthes</i>	<i>Przewalskia</i>	<i>Tzeltalia</i>
<i>Brunfelsia</i>	<i>Ectozoma</i>	<i>Lycium</i>	<i>Quincula</i>	<i>Vassobia</i>
<i>Calibrachoa</i>	<i>Eriolarynx</i>	<i>Mandragora</i>	<i>Reyesia</i>	<i>Vestia</i>
<i>Calliphysalis</i>	<i>Espadaea</i>	<i>Markea</i>	<i>Salpichroa</i>	<i>Withania</i>
<i>Capsicophysalis</i>	<i>Exodeconus</i>	<i>Melananthus</i>	<i>Salpiglossis</i>	<i>Witheringia</i>
<i>Capsicum</i>	<i>Fabiana</i>	<i>Merinthopodium</i>	<i>Saracha</i>	
<i>Cestrum</i>	<i>Goetzea</i>	<i>Metternichia</i>	<i>Schizanthus</i>	
<i>Chamaesaracha</i>	<i>Grabowskia</i>	<i>Nectouxia</i>	<i>Schraderanthus</i>	

[별지 제1호서식]

반납시료 관리대장

[illegible]

“본 서식은 횡 서식임”

[별지 제2호서식]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처리대상	식 물 명		식 물 의 태	
식 물	수 입 국		수 입 자	
가공처리 방 법 명				
가공처리	시 설 명		주 소	
시 설	소 유 자		관리책임자	
가공처리 방법 개요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 및 시설에서 가공처리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가공처리과정서(잔재물, 세척수 처리방안 포함) 신 청 일 자 : 년 월 일 시설소유자 성명 : (서명)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				
승인번호				
처리대상 식 물				
가공처리 방 법 명				
가공처리 시 설	시 설 명		주 소	
가공처리 방법 개요				
가공처리 조 건	1. 운송방법 2. 하역·입고 시 준수사항 3. 잔재물·세척수 보관·처리 방법 등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이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을 승인합니다. 첨 부 : 승인된 가공처리공정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인				

[illegible]

[별지 제5호서식]

가공처리 승인서					
처리대상 식물	식물명			수입물량	
	수입일자			수입자	
	수입국가			B/L번호	
	검역신청서 신고번호				
가공처리 방법					
가공처리 장소	업체명				
	소재지				
가공처리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가공처리 조건	1. 가공처리 기간 : 2. 준수사항 가. 운송방법 나. 하역·입고 시 준수사항 다. 잔재물·세척수 보관·처리 방법 등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공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OO 사무소장) 인					